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13 발의연월일: 2022. 4. 12.

발 의 자: 송재호·김두관·김경만

허 영・박완주・윤재갑

조오섭 · 김회재 · 강준현

임호선 · 최기상 · 윤건영

민형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발전, 비수도권 지역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,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.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.

이에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"지역재투자 평가제도"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. 지역 자금공급, 중소기업 지원, 서민대출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함.

특히, 각 지역에 소재한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. 2021년 기준,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

등급을,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아 시중은행,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 등한 기여도를 나타냄.

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 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 있음. 아울러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 당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아울러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. 이는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,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.

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, 보다 원활한 기업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은행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우대사항과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임.

이에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,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의 5 신설).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2조의5(금융자원의 균형배분)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금된 지역(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) 자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 자하는 등 지역 간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경영상태, 신용도 및 담보력 외에 기술력, 채무상환능력, 대표자의 경력 등 사 업전망을 판단할 수 있는 장기간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간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-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은행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⑤ 제3항에 따른 평가·공표의 대상 및 방법·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2조의5(금융자원의 균형배분)
	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
	어서 예금된 지역(수도권 외의
	지역을 말한다) 자금을 해당
	지역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 간
	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위
	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	② 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
	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경영
	상태, 신용도 및 담보력 외에
	기술력, 채무상환능력, 대표자
	의 경력 등 사업전망을 판단할
	수 있는 장기간 축적된 정보를
	활용함으로써 기업 간 금융자
	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하여 노
	력하여야 한다.
	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
	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내용
	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
	<u>수 있다.</u>
	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
	은행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

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 ⑤
 제3항에
 따른 평가·공표의

 대상
 및
 방법·절차에
 관하여

 필요한
 사항은
 금융위원회가

 정한다.